

## 201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안내

올해 정책자금 규모 3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

올해 정책자금 운영규모는 3조207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증가했다. 특히 기술혁신형 창업 및 성장초기 기업육성을 위해 '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1조4000억원)'을 지난해보다 2200억원 늘렸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2580억원)도 1000억원 늘렸다. 올해부터 정책자금의 배분전략이 그간의 「Negative시스템(특정산업을 제외한 모든산업지원방식)」에서 「전략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방식인「Positive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중기청은 특히, 녹색·신성장동력 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7대 전략산업에 정책자금의 70%인 2조2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태양전지·LED응용·IT융합·고부가식품산업(녹색·신성장동력산업), 금형 등에 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량기업 및 한계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기업에 대한 편중지원을 제한하는 등 정책목적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자체 신용으로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저금리 혜택을 위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우량기업 및 생명연장식 한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절감된 재원(약 3,000억원)은 전략산업의 창업초기기업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http://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편집자 주〉

정부가 올해 3조2075억 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녹색·신성장동력 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7대 전략산업에 정책자금의 70%가 집중 투입된다.

중소기업청(청장·김동선)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송종호)은 지난 12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 및 성장 초기기업,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된다.

이에따라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지난 해 1조1800억 원에서 올해 1조4000억 원으로 증액됐고, 성장 초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역시 지난해 1580억 원에서 올해 2580억 원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지원자금'도 지난해 3000억 원에서 1000억 원 늘어난 4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정책 목적성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7대 전략산업(녹색·신성장동력, 뿌리·부품소재,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바이오,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에 전체 자금의 70%인 2조2000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 우량기업(매출액 500억 원 이상 등)이나 한계기업(창업 5년초과 업체 중 생산성이 낮아 구조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기술성이 뛰어난 우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중진공 융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 편중을 막기 위해 지원 자금별로 이용회수를 제한해 3년 이내, 3회 이상 받지 못하도록 했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이러한 조정을 통해 절감된 3000억 원의 재원을 전략산업 창업 초기기업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정책자금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단순 융자 중심의 위험회피형 지원방식에서 벗어났다는 데 있다.

융자와 투자의 중간성격인 투·융자 복합금융(메자닌 금융)을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저금리(1~2%)로 대출해 준 뒤 기업성장에 따른 영업손익을 공유하는 ‘이익 공유형 대출제도(600억원)’가 도입된다. 또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직접대출을 확대하고(창업 자금 45%(10년)→60%(11년),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75%→80%),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창업 2년이내 신용대출 32.4%→45.0%)한다. 이밖에 정책자금을 통한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계획 1명당 0.1%포인트씩, 최대 1.0%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

### 자금지원 안내(공통사항)

#### 가.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지원)
  -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 동력 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나.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은 50억 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③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다.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한다)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단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http://www.sbc.or.kr))에 공지
- \* 공자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f.go.kr](http://www.mof.go.kr)) 공지사항 ‘2011년 매분기 적용할 공자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 기업평가등급(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시의 기업평가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2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 금리 우대(최대 1%p, 1년간 한시 적용)

#### 라.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
- 중진공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중 일부 자금은 지원기업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투용자 복합금융 방식(이익공유형대출, 성장공유형대출 등)으로 지원

#### 마. 융자 신청·접수

-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 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접수

#### 바. 융자제한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
-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

# 정책자금 정보

- 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재무평가등급 F1, 기업평가등급 B+(단, 재무평가 생략기업은 예외)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500 억원 이상인 기업
- ⑦ 자산규모 50억원 이상 기업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기업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기업은 융자 대상으로 포함)
- ⑧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 금 중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 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재해 피해기업
-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 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

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가입 피해에 따른 손실금 등을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⑨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3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한 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3년 연속 영업손실이 계속된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⑩ 제조업의 경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해 피해기업은 예외)
- ⑪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사업은 수시접수

##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 1. 창업기업지원자금

####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나. 융자규모 : 14,000억원

#### 다. 신청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는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 <1. 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⑧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기존 실패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 사. 접수 시기

- 2011. 1. 3~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사업별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다만,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매월 1일~5일
  -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 매월 6일~10일
  - \* 다만,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해자금, 수출금융자지원

-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②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 라. 융자 범위

#####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p차감(기준금리)
- \* 단, 재창업자금은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가산금리 1.0%p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 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용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실시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 나. 융자규모 : 2,580억원

#### 다. 신청대상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 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

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 원(운전자금은 5억원)

# 정책자금 정보

## 3. 신성장기반자금

### 가.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나. 융자규모 : 7,820억원

### 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신청시 <1. 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⑩항 적용에서 예외
- 농공단지입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쿠폰제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사전진단 및 컨설팅을 받은 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융자

### 라. 융자범위

####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이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당 1회에 한해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허용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이 제품 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 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p차감(기준금리)

####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30억 원(운전자금 5억 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 4. 긴급경영안정자금

### 가. 사업목적

-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나. 융자규모 : 2,200억원

### 다. 신청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지원 제외(11.7.1일 시행)

### 라. 융자범위

#### □ 긴급경영안정사업

-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 비용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KIKO 등 환해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 또는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 기업
      -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용자제한기업 ①항, ②항, ⑧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용자제한)

####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마. 융자조건 및 방식

##### □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p가산(기준금리)
- \*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적용

##### □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기업당 2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최대 2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

출실적의 1/2 이내

-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2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p가산(기준금리)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한국무역보험공사) 직접대출

### 5. 사업전환자금

#### 가. 사업목적

-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 도모

#### 나. 융자규모 : 1,475억원

#### 다. 신청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품목)	전환 진출업종(품목)
모든 업종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일부 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

# 정책자금 정보

류기준)

- 현재 영위하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1. 공동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⑥ 항 적용에서 예외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계속 영위하고 있는 기업

## 라. 융자범위

###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 한정 지원

###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 소요 경비

##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 대출금리에서 0.6%p차감 (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 원(운전자금은 5억원)
  -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연락처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여의도)	02)769-6813~17 02)769-6821~25 02)768-6473~76	전남서부 (무안)	061)280-8000	경기북부 (고양)	031)920-6700
서울남부 (서초)	02)2156-2213~4	전남동부 (순천)	061)724-1056	충북 (청주)	043)230-6811~2
대구·경북 (대구)	053)601-5300	대전·충남 (대전)	042)866-0114, 23	전북 (전주)	063)210-9900
경북서부 (구미)	054)476-9314~6	충북북부 (천안)	041)621-3687	경남 (창원)	055)212-1350
경북동부 (포항)	054)223-2041~3	인천	032)450-0521~3	강원 (춘천)	033)259-7622, 33
부산	051)630-7400	경기 (수원)	031)259-7921, 91	강원영동 (강릉)	033)655-8870
광주·전남 (광주)	062)600-3000	경기서부 (시흥)	031)496-1083~4	울산	052)703-1100
제주	064)751-2054	경남서부 (진주)	055)756-3060		